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


제 846 호 2013. 10. 7(월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164호[공유수면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166호[도로명주소 고시] 3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837호[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람 공고]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856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 6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13 - 164호

공유수면 점·사용 허가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
위와 같이 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3년 10월 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□ 고시내역

허가 년월일 번호	피허가자		접용장소	면적 (m ²)	허가기간 (협의·승인)	접용목적	비고
	주 소	성 명					
2013. 2013 9.27. - 27	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774번지 3층	(주)BDC 대표자 송운용	북구 산하동 941-2일원 지선	330m ²	2013. 09.27. ~ 2015. 8. 31.	풍화계측시설 설치	조건부 허가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- 166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10월 7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17외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i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10. 7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증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명촌지구 878-3-111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0길 17(진창동)	2013-10-07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
2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7-11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33-1(호계동)	2013-10-07	기존 희망명이 주상명사이므로 도로명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
3	울산광역시 북구 호문동 500-7	울산광역시 북구 송도길 22(호문동)	2013-10-07	호문동은 이 마을에 살았던 흐자 송도로 인하여 생겨난 이름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
4	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814-4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77(창평동)	2013-10-07	호계동에 소재하는 도로로 법정동인 호계동의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1-03-22
5	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명촌지구 1196-21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1길 34(명촌동)	2013-10-07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
6	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393-3	울산광역시 북구 기동길 24-3(가대동)	2013-10-07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다.	2004-08-09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- 837호

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람 공고

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어, 「도시개발법」 제40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, 의견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년 10월 02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1. 사업의 명칭 :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
2. 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87번지 일원
3. 면적 : 146,670m²
4. 사업 시행자 :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이동걸
5. 시행 기간 : 2007. 01. 11 ~ 2013. 12. 31
6. 개발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시행내역

공 종 별	단 위	사 업 량	비 고
택지조성	m ²	146,670m ²	
교량공	개소	중산1교~5교 5개소	
배수공	m	우수관 L=1,795m, 오수관 L=2,663m	
상수도공	m	상수도관 L=3,623m	
포장공	a	차도포장 234.2a, 보도포장 51.5a	
조경공	개소	어린이공원 3개소, 가로수, 꽃원 및 녹지대식재	
호안공		약수천 좌, 우안	
교통안전시설물공 전기공사		교통표지판 및 신호등 설치 가로등 및 공원등	
임체교차로 공사		지하차도 외	
기타		사급자재 외	

7.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
 - 기반시설용지(도로, 어린이공원, 완충녹지, 하천 등)는 「도시개발법」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
8. 공람기간 : 공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
9. 공람장소 :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(☎052-294-4553)
10.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(☎052-241-792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3 - 856호

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0월 7일

울산광역시북구청장**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****1. 개정취지**

-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,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연구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연구비 지원근거 신설
(안 제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)

3. 관련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(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(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)
-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(수당 등)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.**5. 의견제출**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3년 10월 27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**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복지지원과장)**에게 전화·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(☎ 241-7605, Fax 241-7609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6. 기타

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은 우리 구 복지지원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

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심의 · 건의하거나”를 “심의 · 건의 · 연구하거나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수당 등) ①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②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연구 실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5조 중 “대표협의체”를 “협의체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능) ①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·건의하거나</u>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	제2조(기능) ①_____
1~5호(생략)	1~5호(현행과 같음)
②~③(생략)	②~③(현행과 같음)
제14조(회의수당)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4조(수당 등) ①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「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<신 설>	②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연구 실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15조(협의체 운영지원) 구청장은 대표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	제15조(협의체 운영지원) _____ 협의체